

2022. 3. 9.(수)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

안 내

2022. 3. 9.(수)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의 주소로 된 사람(이하 '거주불명등록자')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 선거참여방법

㉠ 거소투표

- 신고기간 : 2. 9.(수) ~ 2. 13.(일)
- 신고방법 :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애인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
- 신고대상 : 병원·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
㉡ 사전투표

- 사전투표소 : 전국 읍·면·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
- 사전투표기간 : 3. 4.(금) ~ 3. 5.(토) 오전 6시 ~ 오후 6시

㉢ 선거일투표

- 투표장소 :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
- 투표시간 : 3. 9.(수) 오전 6시 ~ 오후 6시
- * 코로나19 확진·격리 유권자 : 오후 6시 ~ 오후 7시 30분

※ 단, 농·산·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인·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

2 투표준비물

- 사전투표·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
- * 신분증 :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
-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

3 참고사항

-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